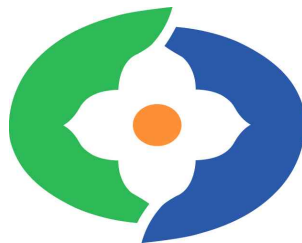


2018년도
건설교통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 2018년도 건설교통과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8. 29. ~ 9. 4. (기간중 5일간)
- 대상기관 : 건설교통과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9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1건
 - 행정상 조치 : 11건(주의 4, 시정 7)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6,591,83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행복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통해 도심지 내 이면도로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11건 (건설관리 1, 교통 2, 도로 3, 농촌개발 4, 공통 1)	주의 4 시정 7		회수 4건 6,591,830원
1	건설관리	◦ 세외수입(도로점용료) 체납관리 소홀	시정		
2	교통	◦ 과태료 수납 계좌관리 부적정	시정		
3		◦ 농어촌버스 재정 및 손실보상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주의		
4	도로	◦ 일상감사 이행 소홀	주의		
5		◦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시정		회수 1건 1,436,000원
6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1,126,000원
7	농촌개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2,524,330원
8		◦ 저수지 준설공사 사토운반거리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1,505,500원
9		◦ 세외수입(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시정		
10		◦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처리 소홀	주의		
11	공통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외수입(도로점용료) 체납관리 소홀

【현 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미압류 현황

(단위:명,건,원)

회계과목	회계연도	체납자 미압류 내역			비 고
		인 원	건 수	금 액	
계속도로점용료	2014-2017	6	9	3,174,730	

※ 별첨 1. 도로점용료 체납자 미압류 내역

○ 도로점용료 체납액 시효소멸분 미결손 현황

(단위:명,건,원)

회계과목	회계연도	체납자 미결손 내역			비 고
		인 원	건 수	금 액	
계속도로점용료	2010-2013	8	13	4,016,830	

※ 별첨 2. 도로점용료 시효소멸분 미결손 현황

【위법부당사항】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로점용료 체납처분 소환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교통과에서는 점용료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즉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황】에서와 같이 2014년~2017년까지 부과된 6명/9건/3,174,730원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소환히 한 사실이 있음.

○ 시효소멸 도로점용료 결손처분 소환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는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실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교통과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2010~2013년도에 부과된 8명/13건/4,016,830원의 도로 점용료 체납액이 시효소멸 완성이므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결손처분하지 않는 등 징수불능 체납액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2014년~2017년까지 부과된 6명/9건/3,174,730원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 독촉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하기 바라며, 2010~2013년도에 부과된 8명/13건/4,016,830원의 도로 점용료 체납액이 시효소멸 완성이므로 징수권 행사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도로점용료 체납자 미압류 내역

연번	구분	회계연도	납부자명	부과대상	최초 부과일자	체납액(원)
	계					3,174,730
1	국유	2014	-	영동군 영동읍	2014-01-02	1,033,830
2	국유	2014	-	영동군 용산면	2014-01-02	236,500
3	국유	2014	-	영동군 영동읍	2014-01-02	377,870
4	국유	2014	-	영동군 용산면	2014-01-02	144,750
5	국유	2017	-	영동군 용산면	2017-01-02	596,300
6	국유	2014	-	영동군 용산면	2014-01-02	175,370
7	국유	2017	-	영동군 용산면	2017-01-02	218,880
8	군유	2014	-	영동군 양강면	2014-03-07	195,640
9	군유	2015	-	영동군 양강면	2015-10-14	195,590

※ 별첨 2. 도로점용료 시효소멸분 미결손 현황

연번	구분	회계연도	납부자명	부과대상	최초 부과일자	체납액(원)
	계					4,016,830
1	국유	2012	-	영동군 영동읍	2012-01-02	947,050
2	국유	2013	-	영동군 영동읍	2013-01-02	986,150
3	국유	2012	-	영동군 용산면	2012-01-02	208,930
4	국유	2013	-	영동군 용산면	2013-01-02	229,720
5	국유	2012	-	영동군 영동읍	2012-01-02	339,220
6	국유	2013	-	영동군 영동읍	2013-01-02	362,270
7	국유	2013	-	영동군 용산면	2012-01-02	111,530
8	국유	2013	-	영동군 용산면	2013-01-02	122,710
9	국유	2012	-	영동군 용산면	2012-01-02	144,970
10	국유	2013	-	영동군 용산면	2013-01-02	159,440
11	국유	2010	-	영동군 양산면	2010-03-31	46,200
12	국유	2010	-	영동군 학산면	2010-03-31	163,000
13	군유	2013	-	영동군 양강면	2013-03-29	195,640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과태료 수납 계좌관리 부적정

【현 황】

○ 계좌 잔액

계좌번호	개설일자	사용용도(부기명)	계좌잔액 (원)	비고
★★★-★★★-★ ★★★-★★	2011.03.21.	자동차손배법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 료 분납(일반회계 과태료)	680,233	18.7.5기준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제3항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과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은 분할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영 제37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 따라 분납이 허용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4항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과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이나 범칙금은 분할납부할 수 없으나(영 제15조, 제21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 따라 분납이 허용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세외수입시스템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회계과목은 군세외(41-288080)로 관리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회계과목은 도세외(31-288151)와 군세외(41-288151)로 구분 관리되고 있음.

- 건설교통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분납 징수를 위해 2011년 3월 21일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분납금액을 이체받아 납부처리를 하고 있는 바, 예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감사시점 기준일인 2015년 10월 29일 이전에 입금된 과태료를 인출하여 납부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이 300,003원이며, 2017년 10월 20일 기준 680,233원으로 누적되어 증가하여 2018년 7월 5일 기준 680,233원이 미처리 금액으로 통장에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입금된 과태료를 즉시 수납하여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과태료 수납과 공급계좌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미가입·지연가입 및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분납관리 계좌 미수납 금액 680,233원('18.7.5.기준)에 대해 계좌입출금내역과 부과대장·징수결의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태료 분납금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세입 조치하기 바라며, 이중수납 등의 사유의 경우 반환조치를 하고, 기타 불분명한 사유의 경우에는 군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니 과태료 수납관리와 공금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어촌버스 재정 및 손실보상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사업 내역			정산보고일	정산검사일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2017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	659,867	656,670	3,197	2018.3.14	2018.4.12	도비50% 군비50%
2017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	638,451	638,451	-	2018.3.14	2018.3.14	도비 5% 군비50%
2017년도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보상 지원사업	-	535,000	530,000	5,000	2018.2.28	2018.3.13	군비100%
2017년도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 지원사업	-	270,000	270,000	-	2018.3.12	2018.3.13	군비100%

【위법부당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따라 보조를 받는 자는 그 자금을 보조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군수는 보조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24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정산보고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실적보고서 제출서류: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2조(정산검사)에 따라 군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①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원천징수 관련 증빙서류(퇴직금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등)를 첨부하지 않고 ② 차량정비 및 보험료 등 기타경비 지출에 필요한 세부 증빙자료(정비내역, 보험료지급내역 등)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정산보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정산검사한 사실이 있으며, 【현황】에서와 같이 사업완료 후 2개월이 지난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농어촌버스 재정 및 손실보상지원사업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정산시 관련 증빙서류와 경비 지출내역 첨부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단계부터 철저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와 같은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이 재발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니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일상감사 이행 소홀

【현 황】

○ 일상감사 미 이행 현황

- 물품구입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구입액 (천원)	계약자	예산 편성목	비고
트럭부착식 살포기	살포기 (1TON, 15TON)	대	2	61,942	충북지방 조달청장	자산 취득비	2016
도로관리 업무용 차량구입	2018카니발 R2.2디젤	대	1	38,547	충북지방 조달청장	자산 취득비	2017
덤프트럭 구입	현대자동차 뉴파워트럭 15TON	대	1	114,110	충북지방 조달청장	자산 취득비	2017
트럭부착식 살포기	살포기 (1TON, 15TON)	대	2	61,942	충북지방 조달청장	자산 취득비	2017

- 공사 설계변경

공 사 명	사업량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추정가격(천원)		
					최초	변경	증
영동군 ○○○○○ ○○○공사	건축면적 178.6㎡	18.09.21	18.03.02 18.09.21	-	192,126	217,514	25,388 (13.2%)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일반입찰 사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사항” 과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

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거나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 증액” 이 될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건설교통과에서는 “트럭부착식 살포기” 외 4건은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사항임에도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영동군 ◎◎◎◎◎◎ ◎◎공사” 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25,388천원 증가(13.2%) 됨에도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일상감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물품구입이나 공사 설계변경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436,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현 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 ◆◆공사	-	16.11.02	16.11.08 ~ 17.05.26	65,956,000	64,520,000	1,436,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공사비는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경비항목 중에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7절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6. 11. 02. ○○○○(주) ★★★와 계약하여 완료된 「◆◆◆ ◆◆◆ ◆◆◆공사」에 있어 내역에 반영된 관매달기 4EA를 설치하지 않았고, 중기운반 및 철근운반 등은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항목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료비와 노무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만 반영하여야 함에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를 반영 후 계산하여 1,43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 ◆◆◆ ◆◆◆공사」설계에 과당 계상하여 지급한 1,436,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공사감독 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26,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부적정

【현 황】

○ 시설공사 제잡비율 초과 산출현황

사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 ■■공사	-	16.04.08	16.04.14 ~ 17.06.12	369,148	368,022	1,126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3항 및 별표6의4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이 건축공사의 경우 3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의5에 의하면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2016. 04. 08. ○○○○○○(주) ▲▲▲과 계약하여 준공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 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으로 안전관리비 총액 대비 20% 미만(200,000원(3.02%), 1회 실시)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로 집행하였음에도 정산 없이 준공처리하여 1,126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안전관리비 총액 대비 20% 미만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로 집행하였음에도 정산없이 「■■■■■■■■공사」도급자에 대해 과다지급한 1,126,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524,33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지급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계(2건)						2,524,330	
①★★★★ ★★★★ 공사	17.09.06	17.09.11 18.03.27	-	56,605,580	56,139,920	465,560	안전 벨트
②◆◆◆◆ ◆◆◆공사	17.12.19	17.12.21 18.04.09	-	64,568,730	62,509,960	2,058,770	안전 계단

【위법부당사항】

○ 건설공사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 ★★★★★공사” 는 용수로 공중상 사용할 수 없는 안전장구인 안전벨트를 사용했음에도 준공시 감액하지 않고 465,560원(제경비 포함)을 초과 지급하였고, “◆◆◆◆◆ ◆◆공사” 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사용불가 항목인 안전계단을 정산시 사용한 것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준공시 감액하지 않고 2,058,770원(제경비 포함)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초과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24,33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지급하는 등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505,5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저수지 준설공사 사토운반거리 정산 부적정

【현 황】

○ 사업현황(표1)

공 사 명	사업량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자	도급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소규모수리 시설(◎◎ 저수지) 준설사업	준설 9,006㎡	17.01.16 ~ 17.03.03 (17.1.11)	-	93,854,900	92,349,400	1,505,500	

【위법부당사항】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5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 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

건)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2017.1.11 ○○○○(주) ▲▲▲와 계약하여 완료된 「소규모수리시설(◎◎저수지)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저수지 준설토를 ◇◇면 ◇◇리 인근 경작지 7곳[☆☆☆번지(V=2,200㎥, L=1.3km), ☆☆☆번지(V=3,776㎥, L=0.3km), ☆번지(V=856㎥, L=6.7km), ☆☆☆-☆☆번지(V=2,480㎥, L=0.3km), ☆☆☆번지(V=377㎥, L=0.8km), ☆☆☆-☆☆번지(V=483㎥, L=4.0km), ☆☆☆-☆☆번지(V=371㎥, L=1.4km)]에 사토한 것으로 준공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설계내역서상 사토운반(V=9,006㎥, L=3.0km)에 대해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하여 1,505,500원(제경비 포함)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소규모수리시설(◎◎저수지) 준설사업 설계내역서상 사토운반에 대해 설계변경없이 준공처리하여 도급자에게 과다지급한 1,505,5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 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외수입(구거의 목적외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현 황】

- 구거의 목적외사용료 미압류 현황

(단위:명,건,원)

회계과목	회계연도	체납자 미압류 내역			비 고
		인 원	건 수	금 액	
구거의 목적외사용료	2015-2017	4	4	1,269,400	

- 체납자 미압류 내역

회계연도	납부자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부과대상
계	4명		1,269,400	
2015	-	2015-01-29	137,05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2017	-	2017-02-21	891,20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2017	-	2017-02-21	138,30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2017	-	2017-05-30	102,850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위법부당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

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 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구거의 목적외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즉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황】에서와 같이 4건 1,269,400원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2015년~2017년까지 부과된 4명/4건/1,269,400원의 구거의목적외사용료 체납액에 대해 독촉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처리 소홀

【현 황】

(단위 :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변경)교부신청일	보조금(변경)교부결정일	보조금(변경)교부결정액	보조금지급일	보조금지급액	보조금정산보고일	보조금정산검사일
2016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	-	2016.1.15. (2016.11.21)	2016.2.11. (2016.12.23)	40,000,000 (39,271,390)	2017.1.11. (사고이월)	39,271,390	2017.2.10. ~2.17	2017.4.13
2017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	-	2017.9.6. (2017.11.22)	2017.10.25. (2017.12.14)	47,674,000 (47,050,780)	2017.12.20	33,734,960	2017.3.23. ~5.11	2018.6.28
2018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	미 실시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예금사본,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1조(정산보고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실적보고서 제출서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등)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2조(정산검사)에 따라 군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II. 지방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사업계획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을 제출받아 담당부서에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심사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시작 전(2016년, 2017년 영농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① 2016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 경우, 본예산을 사고이월시켜 당초 교부결정 11개월 뒤인 2017. 1월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② 2017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사업기간(2017. 4월 ~ 10월)이 끝난 2017.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8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보조금을 감사일 현재까지 교부결정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절차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또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른 법정서식에 따라 정산검사 하지 않는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2018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해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심사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즉시 시행하기 바라며, 추후 보조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정산검사 서식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 황】 “별첨”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 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편성목 일반운영비(201)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성목	통계목	기본경비의 내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현업부서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에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 하며 자산취득비(405), 시설비(401-01), 연구개발비(207), 업무추진비(203)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건설교통과는 별첨내역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시설비(401-01),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201-01)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건설교통과장은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하기 바라며,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현황

회계 년도	지출현황						적정 예산과목
	사업명	통계목	적요	지급일자	지급액(원)	거래처명	
2017	주 차 장 설 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	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피복구입	2017.2.22.	1,500,000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스틸그레이팅 구입	2017.7.6.	174,900	-	시설비
	교 통 안 전 시설물	사무관리비	버스승강장 운영관리 용품(선풍기) 구입	2017.7.27.	510,000	-	자산및물품취득 비
	교 통 안 전 시설물	사무관리비	버스승강장 운영관리 용품(선풍기)구입(2차)	2017.8.31.	540,000	-	자산및물품취득 비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피복구입	2017.11.8.	2,160,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 지급(17.11.24)	2017.11.30.	56,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 지급(17.11.23)	2017.11.30.	35,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8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1.10)	2018.01.12.	56,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1.09)	2018.01.12.	56,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1.08)	2018.01.12.	56,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 식 비 (2018.01.11.~01.13)	2018.01.16.	12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 식 비 (2018.01.22.~01.23)	2018.01.24.	8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2.03)	2018.02.06.	4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2.07)	2018.02.09.	40,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교 통 질 서 확립	사무관리비	버스승강장 안내도우 미 기간제근로자 근 무복 구입	2018.02.09.	600,000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2.12)	2018.02.14.	4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2.13)	2018.02.19.	4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2.23)	2018.02.28.	4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 식 비 (2018.02.28.~03.04)	2018.03.06.	8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3.08)	2018.03.12.	48,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봄철 피 복 구입	2018.03.16.	2,000,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업무추진 급식비(2018.03.21)	2018.03.23.	56,00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교 통 질 서 확립	사무관리비	버스승강장 안내도우 미 기간제근로자 근 무복(하복) 구입	2018.05.04.	600,000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